

1. 개정이유

「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제2항의 위탁기관의 범위 확대 개정에 따라, 같은 법 시행규칙에 관련 내용을 정비 및 자구 수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공동체의 등록, 변경등록, 등록취소, 공동체 자체규약 변경 시 알려야 하는 기관의 범위 관련 조항 정비 및 자구 수정

- 1) 제4조제3항의 “및 「민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”를 “,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및 법 제13조에 따른 위탁기관”으로 변경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「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
일부개정령안

「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및 「민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”를 “,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및 법 제13조에 따른 위탁기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공동체의 등록) ① · ② (생략)	제4조(공동체의 등록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,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·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,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, 「민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회 및 「민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(이하 “관계기관”이라 한다)에 각각 알려야 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, <u>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</u> 및 <u>법 제13조에 따른 위탁기관</u> ----- -----.